

2013. 6. 26.

담당부서: 사법지원실 닭 당 자 : 박재영 심의관

공보관실 : 🏗 3480-1326



## - 전자소송규칙 개정 -

##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(e-post 송달방식) 도입과 절차별 전자소송 시행시기 조정해

- 1. 대법원은 2013. 6. 21.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(이하 '전자소송규칙'이라 함)을 개정함
- □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
- □ 전자소송에 우편법상 '전자우편'을 이용한 송달방법(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 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 게 배달하는 방식). 이른바 e-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
- □ 안정적인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효과적인 전자소송 교육 등을 위하여 절 차별 법 적용시기를 조정함
- 2. 개정 전자소송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□ 법이 적용되기 전의 재판절차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(예: 보전처분 전자소송에 시행되기 전 민사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된 가압류신청서 등)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(규칙 제18조의3)
- □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가 전산등재 과정상 잘못으로 무효 인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, 오산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할 수

있도록 하며, 재판서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는 조서의 폐 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함(규칙 제19조)

- □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,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그 통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(규칙 제26조)
- □ 우편법상 '전자우편'을 이용한 송달방법(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 를 전송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), 이른바 e-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(규칙 제29조)
- □ 법 적용시기를 「가사소송법」 제3편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인 성년후견 등 사 건에 관하여 2013. 7. 29.로 정하고, 보전처분 등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. 8. 1.에서 2013. 9. 16.로. 도산사건에 관하여 2014. 1. 27.에서 2014. 4. 28.로. 집행·비송사건에 관하여 2015. 1. 26.에서 2015. 3. 23.로 각 조정함(부칙 개정안)
- 3.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독촉절차에 서도 e-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(제11조)